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중에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안('21.6)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중인 6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의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1 개정)

- 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개의 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사의 인천지역본부를 삭제하고, 같은 란의 공사의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를 삭제하며, 같은 표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란 중 “경기서부지사”를 “고양지사”로 하고, 같은 란 부동산원의 포항지사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창원지사	경상남도
성남지사	경기도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구역(제21조 관련)			[별표1]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구역(제21조 관련)		
기관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	관할구역	기관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	관할구역
공단	(생략)	(생략)	공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사	<u>인천지역본부</u>	<u>인천광역시</u>	공사	(삭제)	(삭제)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u>경남지역본부</u>	<u>경상남도</u>		(삭제)	(삭제)
	<u>경기지역본부</u>	<u>경기도</u>		(삭제)	(삭제)
	<u>부산울산지역본부</u>	<u>울산광역시</u>		(삭제)	(삭제)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전주지사	전라북도		전주지사	전라북도
	춘천지사	강원도		춘천지사	강원도
	<u>경기서부지사</u>	경기도		<u>고양지사</u>	경기도
	대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포항지사	경상북도		포항지사	경상북도
	(신설)	(신설)		<u>인천지사</u>	<u>인천광역시</u>
	(신설)	(신설)		<u>창원지사</u>	<u>경상남도</u>
	(신설)	(신설)		성남지사	경기도
	(신설)	(신설)		<u>울산지사</u>	<u>울산광역시</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연 락 처	(044) 201 - 3314